

전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109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1091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단42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1. 10. 7.

판결 선고 2021. 11. 18.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단42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50,000,000원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대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130,000,000원인데, 계약금 25,000,000원, 중도금 25,000,000원, 잔금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총 매매대금과 50,000,000원 상당의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차액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을 지급받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E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F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전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0804호의 불기소 결정서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F 스스로 피고로부터 E 토지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였고, 실제 일부 계약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법원 증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그 증언을 신빙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래서 5,000만 원을 F씨한테 매매계약금조로 건넨 건은 사실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F씨를 불러가지고 나머지 2,700만 원이 건넨 건은 안 건넨 건은 사실 확인을 해야 할 문제지만

제가 본 것은 2,300만 원은 제 사무실에서 건넨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했던 점, ③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고, 기 지급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와 같이 매매계약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인 '매도인의 지위,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를 처분문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50,000,000원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대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